

2025년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 추진계획

경제적 어려움이나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밑반찬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□ 사업근거 및 취지

- O 사업근거
- 관련법령 : 「노인복지법」 제27조의 2(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)
 -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
- 관련지침 :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[[
- O 사업취지
- 주기적 안부 확인을 통한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
- 노인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예방적 복지 실현

□ 세부 추진계획

- 사업기간 : 2025. 1. 1. ~ 2025. 12. 31.
- **○** 사 업 비 : 191,505천원(군비100%)
- 사 업 량 : 186명
- 사업대상 : 만 65세 이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60%이하 거동불편 노인
- O 지원기준
 - 지원단가 : 3,300원(1회), 연간 260일
 - 지원메뉴 : 4종류 이상 밑반찬 또는 필요 시 대체식
 - ⇒ 대체식은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한 것으로 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가능
 - 지원주기
 - 주 1회 이상 대상자에게 지원하되, 수행기관별 1일 식사배달 서비스 대상인원을 45명 이내로 운영 ⇒ 기 운영체계 시달



• 추진체계

서비스 신청 및 접수	\Rightarrow	대상자 결정 및 통보	\Rightarrow	서비스 제공	
(읍·면)		(군)		(수행기관)	

○ 수행기관

• 선정기준: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기관(도비지원 승인기관) 중 사업 추진에 필요한 조리시설 및 인력을 갖추었거나 타 기관 조리시설 및 인력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

• 기관별 배정내역

(단위: 천원)

			(
기 관 명	관리지역	인원	예산액	비고
합계		186명	191,505	
산청한일노인 통합지원센터	산청읍, 오부면, 생초면, 금서면	65명	65,112	
산청복음노인 통합지원센터	삼장면, 시천면, 단성면	66명	68,942	
산청해민노인 통합지원센터	신안면, 생비량면, 신등면, 차황면	55명	57,451	

□ 추진일정

○ 2025년도 사업계획 심사 및 승인 : 2025년 1월

○ 2025년도 보조금 신청 및 교부 : 2025년 1월, 4월, 7월, 10월

O 사업대상자 관리 및 실적보고 : 익월 15일 이내

□ 행정사항

O 산 청 군 :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

○ **읍** · 면 : 사업 신청 · 접수 및 대상자 관리

○ 수행기관

- 사업 대상자 발굴 및 선정 시, 지역별 균등하게 선정

- 대상자 관리, 보조금 정산, 실적 보고